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2. 16 선고 2022가합102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조용균, 김광미

2.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5. 17. 접수 제360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25. 접수 제458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보증약정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C과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최종 연장된 보증기한
1	2019. 3. 26.	297,500,000원	2020. 3. 26.	2022. 3. 25.
2	2019. 3. 26.	180,000,000원	2020. 3. 26.	2022. 3. 25.
3	2019. 3. 26.	405,000,000원	2022. 3. 25.	
4	2019. 3. 26.	897,300,000원	2024. 3. 26.	
5	2020. 4. 29.	475,000,000원	2021. 4. 29.	2022. 4. 29.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C이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손해금에 대한 2020. 6.

1.부터의 약정손해금율은 연 8%이다.

3) C은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보증원금 상당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4) C은 2021. 9. 11.경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C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2022. 1. 20. 중소기업은행에 1,827,343,775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4,785,910원을 회수하였고, C에 대한 구상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비용으로 7,581,806원을 지출하였다. 위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는 C을 상대로 'C은 원고에게 1,830,139,671원(= 1,827,343,775원 - 4,785,910원 + 7,581,806원) 및 그중 1,822,557,865원(= 1,827,343,775원 - 4,785,910원)에 대하여는 2022. 1. 21.부터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2. 3. 인천지방법원 2022차전102609호로 위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명령은 2022.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1) C의 대표이사인 D은 2021. 1. 15. 피고 A과 대여금 3억 원, 선이자 및 금융수수료 1,000만 원, 변제일 2021. 5. 17.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은 D의 피고 A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21. 5. 14.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접수 제360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은 2021.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25.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접수 제4589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자산 상태

1)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21. 10. 6. 기준 최소 5,280,045,030원에서 최대 6,437,562,030원으로 평가되었다.

2)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8억 6,000만 원, 피고 A에 대한 채무 3억 원 및 피고 B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C에게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C에게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2019. 3. 26. 및 2020. 4. 29.에 체결되었으므로,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1. 5. 14. 및 2021. 6. 23.에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C은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3~4개월 후인 2021. 9. 11.경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일으킨 점, ③ 원고가 2022. 1. 20. C의 보증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중 1,827,343,775원을 변제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10. 6. 기준 가액이 5,280,045,030원부터 6,437,562,030원까지의 범위 내인 사실, C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8억 6,000만 원,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억 원 및 피고 B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6,437,562,030원을 초과하지 않은 반면 소극재산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8억 6,000만 원만으로도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3) C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 A의 선의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나) 피고 A은,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이 D에게 실제로 대여한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계약체결 당시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A의 주장에 의하면, C과 피고 A은 향균, 투명마스크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C의 대표이사인 D이 2021. 1.경 피고 A에게 C의 자금난으로 인해 위 마스크 사업의 투자가 어려워니 C의 운영자금 3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A이 D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게 되었고, D이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 무렵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 A이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은 C의 사업 운영상황,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C에게 피고 A은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류연중, 판사 박효송, 판사 하지인

별지